

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2089 판결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330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208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소10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4. 3. 7.

판결 선고 2024. 3. 28.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소10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8. 28. 춘천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춘천시 D 토지는 지목이 '체육용지'이고, 이 사건 전체 건물은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

나. C은 2006. 10. 4. 춘천시장에게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8층 및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업, 'F'이라는 상호로 헬스장 등 종합체육시설업¹⁾의 각 신고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9. 5. C이 운영하던 F에 입회보증금 18,000,000원을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C이 운영하던 E 및 F의 체육시설업 신고는 2011. 4. 15. 춘천시장에 의하여 직권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1. 3.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2016. 10. 19. H가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0. 1. 29.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2021. 12. 31.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가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B'라는 상호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회원탈퇴를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들이 C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I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G, H, I가 순차적으로 C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이 C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 H, I가 순차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사실, H가 G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 I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G, H, I가 C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순차 승계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I가 G, H를 거쳐 C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전전 승계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I로부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4호에 따라 C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이 영위하던 이 사건 영업은 이 사건 건물이 G에게 경락될 당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노후화되어 이를 곧바로 영업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으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갖지 못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와 I 사이에 이 사건 영업의 양수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라 볼 수 없어, 피고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절차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이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법률상 매매로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절차'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법률상 매매를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절차'로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노후화되어 이를 곧바로 영업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I로부터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배성준

판사허경은

1) 종합 체육시설업인 F은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3~12층에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